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

장 준 오*

국 | 문 | 요 | 약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와 노인이 당하는 범죄피해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현상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2007년 전남 보성의 어부노인의 관광 객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경우나 2008년 사회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국보 1호인 송례문을 방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도 언론매체에 매일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이 저지른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환경에서 왜 저지르는가를 살펴보는 한편, 노인이 당하는 범죄피해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고 노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현재 복역중인 노인수형자 중에는 살인범죄와 사기범이 가장 많으며 10여년 전에 비해 강력범죄가 많이 증가하였다. 범죄동기는 “부에 대한 욕심”이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으며 원한이나 분노(17%)는 두 번째로 높았다. 노인수형자의 전과비율은 54%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된 피해자는 자영업자(40.5%)가 가장 많았다.

이 연구의 범죄피해의 분석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피해 경험이 낮아졌다. 또한 최종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직업이 있고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범죄 피해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다. 그리고 노인범죄나 범죄피해에 대한 대책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였다. 노인이 저지르는 강력범죄의 경우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의 은퇴 후의 생활설계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한편, 노인에 의한 재산범죄피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단체의 범죄방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 주제어 : 노인범죄, 노인범죄피해, 노인수형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와히딘과 케인(Wahidin and Cain, 2006)은 연령이라는 변수는 인종이나 성별 변인과 더불어 범죄학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주요 분석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한국사회 곳곳에서 노인에 의한 심각한 범죄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70대의 어부가 관광객을 자신의 어선으로 유인하여 성폭행하고 살인한 사건이나 2008년 70대의 노인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승려문을 방화한 사건 등과 같이 노인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효도관광이나 보조의료기기 판매사기라든지,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노인이 쉽게 범죄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몇 몇 나이드 사람의 돌출적이고 일시적인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인과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이런 사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노인을 단순히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을 확률도 증가하게 되는 동시에,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하게 된다.

1.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한편, 노인인구가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¹⁾에 진입하였고,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과 점증하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7월 현재 한국의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0.3%로 14세 미만 인구(17.4%)의 절반을 넘어섰다(통계청, 2008). 연도별 노인인구 비율 및 고령화지수²⁾를 보여주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의

1)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를 초과한 사회,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4%를 초과한 사회,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초과한 사회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진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5년에 25% 수준이었던 고령화 지수는 2000년에 34%를 넘었고, 2005년에는 다시 10%p 이상 증가한 47%를 상회하고 있다. 게다가 노인인구 비율이 2018년 14.3%, 2026년 20.8%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 연도별 노인인구 비율 및 고령화지수(65세 이상)

(단위: 명, %)

구 분	합 계	남	여	고령화지수
1980	1,446,114	539,481	906,633	11.2
1985	1,749,549	652,079	1,097,470	14.2
1990	2,162,239	810,656	1,351,583	20.0
1995	2,640,205	974,704	1,665,501	25.2
2000	3,371,806	1,287,397	2,084,409	34.3
2005	4,365,218	1,736,346	2,628,872	47.3

출처: 통계청 DB.

이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배경에는 출산율 저하가 한 가지 이유로 자리 잡고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추세 때문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가속화 될 것이다.

2. 노인범죄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는 또한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의 증가를 수반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젊어진’ 노인인구의 대거 등장은 노인의 실질적인 “비(非)노인화 현상”을 보편화시킴으로써 노인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범죄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범죄피해 측면뿐 아니라, 노인이 범죄의 주체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고 가해자가 되는 ‘노인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젊은’ 노인들의 증가 현상은 노인이 더 이상 범죄의 피해자만은 아니며 범죄 가해자로 그 비중이 증가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노인범죄는 지난 10년간

2)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의 인구/0~14세 인구 x 100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노인들의 범죄 피해 역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래에 노인 범죄가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는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저지르는 단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노인범죄의 증가율이 전체 범죄의 증가율을 추월하여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노인들이 매년 10% 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60세 이상의 노인 수형자가 2005년에 1,032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고 2008년 말에는 3,000명을 넘어 노인범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변영과 안정성을 반영하는 지표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노인 연령층의 증가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 최근 노인층의 범죄 발생과 다양한 종류의 범죄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형사정책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II.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인범죄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추세를 확인하고, 노인범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노인들의 범죄피해 추세를 확인하고, 노인들은 어떤 범죄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인식은 어떤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이 노인의 범죄나 범죄피해에 어떻게 유해한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노인범죄를 예방하고 노인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연구내용은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공식통계 분석을 통해 노인범죄의 발생 추세를 확인하고, 전국 교정

기관에 수감되어 있는 노인 범죄자에 대한 ‘신분장’ 자료 분석을 통해 노인범죄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내용은 공식통계를 통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질러지는 범죄피해의 추세를 분석하고, 전국규모의 조사를 통해 노인들의 범죄피해 경험과 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연구내용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환경의 안전성 및 유해성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이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론적 고찰을 위한 문헌연구(contents analysis)와 더불어, 노인범죄 추세 및 노인의 범죄피해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 국가의 공식통계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한편, 노인범죄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2008년 4월 현재 전국의 교정기관에 노인범죄자로서 수형중인 737명 전원에 대한 기존 자료(‘신분장’)를 통계 처리하는 2차 분석(secondary analysis)을 하였다.

노인들의 범죄피해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설문조사(survey)가 이루어졌다. 전국에서 약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도시/농촌과 남성/여성의 비례에 따른 표본 수의 할당이 이루어진 다음에, 각 지역별 구체적인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과 표집은 다단계층화표집(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노인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문헌자료 및 노인환경의 유해성 인식 소집단 심층면접 자료 등은 질적 분석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고, 법무부 교정본부의 노인범죄자 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는 양적분석을 위한 통계처리가 이루어졌다.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빈도분석(Frequency), 교차분석(Cross-tabulation), 변량분석(Anova),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의 통계처리가 이루어졌다.

Ⅳ. 노인의 특성 및 노인범죄와 범죄피해 이론

1. 노인의 특성

가. 노인의 정의

노인에 대한 정의는 지역적(혹은 국가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노인(老人)’이라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늙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누가 또 언제부터 ‘노인’인가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노년학회는 노인을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김인숙, 1998).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노인으로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위사람들이 노인으로 간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서구에서는 통상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간주하지만, 한국에서는 만 60세 되는 해인 회갑의 영향으로 60세를 노인으로 규정하는 연령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김태현, 2007). 한국의 국민연금 수령 연령도 현재까지는 60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60세 보다는 서구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경향이 늘고 있다(정태인 외, 2008: 182).

한동효(2008)는 노인에 대한 정의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자신을 노인이라고 규정한다. 둘째,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노인으로 규정하는 계량적 정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이 이런 정의를 따르고 있다. 「노동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이란 경로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연령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지칭한다. 「국민연금법」은 가입대상자의 자격을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으로 정의함으로써, 60세 이상의 연령계층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역할상실을 노인의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연령규범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한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한

다. 넷째, 국제노년학회가 정의한 기능적 규정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범죄분석 관련 통계에서나 교정기관에서는 만 60세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을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노인’은 만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나. 노인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앞에서 언급한 노인의 정의에 따르면, 노인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특징을 가지게 된다. 첫째, 노동력의 노후화나 은퇴로 인한 소득상실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감소하고 의존성이 증가한다. 둘째,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경제적 능력의 감소는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상실하게 하며 사회집단으로부터 소외된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노인은 더 이상 지혜로운 공동체의 리더로 여겨지지 않으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셋째,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건강이 나빠거나 만성질환을 가지게 되면서, 일상생활의 사회적 활동성이 저하되고 행동 및 적응력의 감퇴 등으로 인해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페인버그(Feinberg, 1984)에 의하면, 노인과 비(非)노인 사이에는 직장의 책임감, 상대적으로 잘 짜여져 있지 않은 시간 계획, 제한된 재정적 독립성, 상대적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의 차이, 생산이나 소비에 있어서의 차이, 놀이와 여가 시간에 대한 강조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경제적, 가족적, 정치적 역할이 증대되는데 비해 노인들은 그런 역할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청소년들은 주류사회에 진입되기를 기대하지만, 노인들은 주류사회를 떠나게 된다.

2) 신체적 특성³⁾

서구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65-75세 노인은 비교적 활동적이고 건강한 초기 노인(young-old)으로, 초기 노인보다 도움을 더 요청할 가

3) 이 부분은 정태인 외(2008) 183~185쪽에서 인용함.

능성이 많은 75세 이상의 노인은 고령 노인(old-old)으로, 그리고 85세 이상의 노인은 초고령자(oldest-old)로 불린다(Newgaten, 1996; 정태인 외, 2008에서 재인용). 특히 초고령자는 초기 노인이나 고령노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건강이 더 나쁘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더 고통을 받기 쉽다.

노화 과정(aging process)은 일차와 이차로 분류될 수 있다. 일차 노화 과정(primary aging)은 신체 세포로, 이차 노화 과정(secondary aging)은 운동의 결핍, 스트레스, 잘못된 영양상태 그리고 질병과 같은 환경적 요소로 인해 야기된다(Whitbourne, 2005; 정태인 외, 2008에서 재인용).

일차 노화 과정은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가 생기거나 탈모가 되고, 주름살이 늘고 질병에 대해 허약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육체는 나이가 들면서 퇴화된다. 이차 노화 과정에는 스트레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자체로 이차 노화 과정을 촉진시키며, 또 노인이 되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감소된다(Rowe and Kahn, 1998; 정태인 외, 2008에서 재인용). 한편 이와 같은 노인들의 스트레스를 이용하여 범죄자들은 노인대상 사기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인들의 외로운 점을 이용하여 효도관광을 빙자한 의료용품이나 건강식품을 사기판매 하기도 한다.

3) 심리적 특성

노화 과정은 신체적 측면과 더불어 심리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수반한다. 사회적 요인들은 노화 과정의 심리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지위와 자기 존중은 노화 과정이 일어나면서 특히 중요하다. 노인들은 자신들의 행동반경이 축소되며 일자리에서 은퇴를 하고,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을 하나 둘 떠나보내고, 사회 참여활동이 줄어들면서 그들의 세계는 축소된다. 동시에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덜 중요하게 된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게 되므로 기존 생활방식으로부터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노인에게 그러한 조정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노인의 새로운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자신들이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참조해야 할 역할 모델이나 준거 집단이 별로 없다. 특히 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현상과 개인주의 사고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노인관이 급격히 뒤바뀌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인

세대의 심리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

4) 경제적 특성

일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능력을 주는 기반이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감도 부여한다. 산업화 이전 서구사회와 오늘날의 많은 비서구사회에서 노인들은 대개 움직일 수 있는 한 자신의 체력에 맞추어서 일을 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은퇴제도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반대급부를 받는 일을 하기 어려워졌고 따라서 정체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노인들에게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다. 이전처럼 대가족 제도 하에서 자녀들의 부양을 받기도 어렵게 된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은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할 처지가 되었지만, 이러한 준비가 제대로 된 노인은 소수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건강문제가 큰 문제가 된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의료비는 노인들의 경제생활을 괴롭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2. 노인범죄(가해) 이론

가. 노인범죄의 특성

노인범죄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 특유의 특성 그 자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노인의 범죄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이건중·전영실, 1995; 김중오, 1997; 김현옥, 2002). 노인의 신체적 퇴화로 인해 범죄에 가담할 신체적 능력이나 지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둘째, 노인범죄자들은 과반수 이상이 재범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다(이건중·전영실, 1995; 김현옥, 2002; 경찰백서, 2007; 한동효, 2008). 셋째, 직업적 범죄자의 범죄는 체계적인 반면에 노인범죄는 순간적인 충동감 또는 우발적인 범죄가 많다(이건중·전영실, 1995; 한동효, 2008). 넷째, 노인범죄자는 남성이 훨씬 많다. 여성 비율은 범죄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15%-25%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노인의 신체적 퇴화로 인해 폭력범죄보다는 재산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고 있지만, 노인은 인간관

계의 기술이 부족하여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높으며(김현욱, 2002), 강력범죄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한동효, 2008).

나. 노인범죄이론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들이 오랫동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론이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으나 많은 학자들은 일반 범죄이론들을 노인범죄에 적용하거나 적용의 정당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Akers, La Greca, and Sellers, 1988; Brogden and Nijhar, 2006 ; 이현희 · 원영희 · 구자숙, 2003; 한동효, 2008).

노인범죄와 연관된 연구들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노인범죄를 가해자의 입장에서 추세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김종오, 1997; 김인숙, 1998; 이영남, 1998; 김승용, 2002; 오홍수, 2003; 이현희 외, 2003; 이종원, 2004; 구현아, 2007). 이들 연구들은 노인범죄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한 연구는 매우 적고 주로 범죄백서나 범죄분석 등 기존의 공식범죄 통계를 바탕으로 한 추세나 비교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노인범죄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분석한 연구들로 노인범죄피해나 범죄피해의 두려움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연구들이다(김승용, 2000; 허경미, 2004, 2006). 다음은 노인범죄를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 일반이론들이다.

1) 사회학습이론, 사회통제이론 및 아노미 이론

에이커스와 그의 동료들(Akers, La Greca, and Sellers, 1988)은 사회학습이론, 사회통제이론 및 아노미 이론이 노인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 이론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론이기 보다는 청소년들이나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범죄이론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알코올 중독과 남용에 대한 실험에서 이 이론들이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노인범죄 전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모방을 통해 생성된 사회적 행동은 보상(reward)에 의해 긍정적으로 강화되거나(positive reinforcement),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강화된다(negative reinforcement). 반대로 사회적 행동은 부정적인 자극에 의해 약화되거나

(positive punishment), 보상의 결여에 의해 약화되기도 한다(negative punishment). 이런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과정에서 일탈행동을 하게 되거나 정상적인 행동을 거부하게 된다. 노인의 알코올 남용과 음주운전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들이 부모나 친구들의 행위를 모방해 음주를 하듯이, 어렸을 적에 부모의 음주습관이나 과음하는 가정에서 자란 환경이 노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Akers, La Greca, and Sellers, 1988).

둘째, 에이커스와 그의 동료들은 사회통제이론을 가지고도 노인범죄를 설명하였다. 허쉬(Hirschi, 1969)의 사회통제이론의 요인 중 하나인 애착(attachment)이 노인범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비해, 노인은 배우자나 장성한 자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통제이론의 또 다른 요인인 참여(involvement)도 노인범죄의 중요한 변인이다. 예를 들어,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에서의 활동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노인들은 취미생활(자원봉사활동, 혹은 교회에서의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는지가 일탈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자신의 기대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긴장하게 되고 이는 더 나아가 아노미 상태로 발전하게 된다. 에이커스와 그의 동료들은 노인들을 이런 아노미적 상태를 만드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 언급했다. 첫째, 정년 퇴직, 배우자 상실 등은 노인의 지위나 역할을 바꾸게 된다. 둘째, 사회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며 노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역할을 놀이나 여가활동에서 찾게 된다. 셋째, 젊음 지향적인 사회에서 노인이 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된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있어서 아노미란 인생의 목적과 실질적인 성취의 괴리의 일종이다. 이런 사회적 괴리가 노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행동보다는 일탈행동에 몰입하게 유인한다는 것이다.

2) 활동이론(Activity theory)

활동이론은 노인의 생물학적(혹은 신체적) 현상이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심리적 현상이 변화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노인은 중년기와 유

사한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김종오, 1997).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원하고 집단 활동과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신체적으로 사회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변하게 되고 심리적 만족감과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 노인들은 사회봉사를 통해 자기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의 기회를 잃게 되면 탈취당한 역할에 대한 보상심리로 일탈행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김승용, 2000; 이종원, 2004).

3) 현대화 이론(Moderation theory of aging)

이 이론은 현대사회에서 노인범죄의 발생 원인을 사회변화의 맥락에서 조망하였다(모선희 외, 2006).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고 전통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사회의 현대화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특정 사회의 현대화 혹은 산업화 정도와 반비례하여 낮아지고 이것이 노인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김종오, 1997; 이종원, 2004).

즉 산업화된 사회에서 노인에게 의한 지식이나 정보의 독점은 새로운 산업화의 정보나 생산기술에 의해 서서히 무너지게 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줄어들게 되며 사회적 지위가 내려가게 된다.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1) 역할상실 및 여가 시간 문제, 2) 수입 감소 및 경제적 의존 문제, 3) 건강문제, 4) 사회적 고립과 소외문제 등이 노인의 범죄를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모선희 외, 2006).

3. 노인범죄피해 이론

가. 노인범죄피해의 특징

허경미(2004)는 노인의 범죄피해의 특징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특정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보다 범죄피해를 입을 확률이 더 크다. 예를 들어, 노인이 되면 신체적으로 퇴화되고 사물에 대한 판단능력이 떨어지거나 충격에 대한 순간적인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기나 핸드백 날치기 등과 같은 범죄피해를 젊은 세대보

다 더 많이 당하고 있다. 둘째, 노인은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크다. 셋째, 노인의 범죄피해는 정신적 피해가 물질적이나 육체적 피해보다 크다. 넷째, 범죄를 경험한 노인은 신고를 꺼린다. 가까운 지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않는다. 허경미(2004)는 이런 여러 가지 범죄피해의 특징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들고 있다.

샤아프(Sharpe, 2003)는 사기꾼들이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을 이용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인들이 당하는 사기범죄피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신뢰

노인들은 ‘남에게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라는 생활의 습관 때문에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모르는 사람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Sharpe, 2003:11). 또한, 많은 노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도 남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아주 잘 차려입고, 이야기도 잘 하고, 친절할 젊은 사람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고 있다. 노인에게 좋다는 건강식품 판매 사기를 보면 상당수의 노인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예의바르고 자신들을 이해해주는 젊은이들을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있다.

2) 접근성(Accessibility)

노인들은 은퇴하였거나 신체적 문제 때문에 집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로 인해 전화판매나 방문판매를 통한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3) 소외와 고독

노인들은 가족이나 친척 혹은 지인들의 방문이 잦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긴 시간동안 대화하는 것을 즐기게 된다. 특히 배우자를 사별한 경우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한 경우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노인들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보이게 된다. 이때 방문판매나 전화판매를 하게 되면 상당수의 노인들이 판매사기에 넘어가게 된다. 이들 노인들은 사기를 당하더라도 누구에게 하소연하거나 상의할 수 있는 상대가 별로 없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사기범죄자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범죄대상이 되고 있다.

4) 신체 및 정신건강의 약화

나이가 들에 따라 신체적 고통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들어 줄 가족이나 친지 혹은 지인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주는 건강증진 사거나 의료행위 사기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빈번히 나타나게 된다. 노인들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행각은 대상이 손쉽게 당할 뿐 아니라 수익성도 다른 판매사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기범죄자들이 선호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5) 재산(assets)

나이가 들면 소득이 없어져 가난해진다는 속설과는 달리, 근래에는 노인들이 자손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신들의 남은 삶을 위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식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다. 사기꾼들은 이들 재산을 대상으로 삼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 이들의 재산을 갈취한다(Sharpe, 2003:14).

나. 노인의 범죄피해 이론

1) 생활양식노출 이론(Life-style Exposure Approach)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생활양식노출 이론이 있다. 힌더랭과 그의 동료들(Hindelang, Gottfredson, Garofalo, 1978)에 의해 소개된 이 이론의 주요 개념은 ‘생활양식(life-style)’이다. 생활양식은 일상적인 여가시간과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의 직업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생활양식은 또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구수입, 인종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혹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범죄피해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힌더랭 등은 생활양식에

따른 7가지 명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특히 저녁시간에) 범죄의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
- (2) 특정 생활양식을 따르는 개인은 공공장소에 더 자주 간다.
- (3) 특정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들과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 (4)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인구학적 범주에 속할수록 범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커진다.
- (5) 가족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정도는 생활양식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 (6) 범죄피해를 당할 개인의 기회는 가족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비례하여 증가한다.
- (7) 생활양식의 다양성은 개인의 범죄피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명제들을 통해 힌더랭 등은 젊은 소수인종의 남성에게 개인의 범죄피해율은 높은 것을 밝혀냈으며, 그 이유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종의 젊은이와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힌더랭은 자신의 이론이 노인의 범죄피해에 적용될 수 있다고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퇴직 후의 노인의 생활양식이 가족구성원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 범죄피해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는 점은 힌더랭의 이론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일상생활론(Routine Activity Approach)

생활양식노출 이론을 보다 발전시킨 일상생활론(routine activity approach)은 범죄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발표한 코헨과 펠슨(Cohen and Felson, 1979: 593)은 가정(home)에서 멀어진 일상생활이나 다른 활동을 할 경우에 범죄의 기회가 증가하고 피해를 입을 확률도 높아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이론은 범죄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범죄피해의 설명변인인 (1) 동기화된 범죄자

와의 근접성(proximity to motivated offenders), (2) 범죄대상이 될 수 있는 적당한 목표의 존재(availability of suitable targets), 그리고 (3) 보안장치나 감시인의 결여(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가 적절하게 수렴할 때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코헨과 펠슨은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범죄피해자가 집을 떠나서 잠재적(혹은 동기화된) 범죄자와 가까이 근접해 있거나, 집안에 보안장치나 감시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특히 노약자나 독신여성)이나 물건(자전거와 같이 이동하기 쉬운 물건이나 값비싼 오디오제품 등)이 범죄대상으로 쉽게 나타날 때 범죄피해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코헨과 펠슨은 범죄 대상의 목표가 있고 여기에 보안장치나 감시인의 결여가 함께 작용할 때 범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Cohen and Felson, 1979: 589).

이건종과 전영실(1995)과 허경미(2004, 2006)는 생활양식 노출론과 일상활동론의 관점에서 노인의 범죄피해를 연구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절도나 강도 피해는 집근처나 대중교통 수단, 길거리 등에서 더 많이 당하고 있으며, 폭행의 피해는 타인의 집, 유흥업소 및 길거리가 대부분이어서 생활양식이 범죄피해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거나 고급 옷차림 및 동행 없이 외출하는 경우 더 많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이건종 · 전영실, 1995). 허경미(2004)는 공식통계에서 나타난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을 분석하여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특성상 사기 등의 재산피해 및 상해나 폭행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범죄 대상의 매력성과 근접성 및 보호장치의 부재 등의 요인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V. 공식통계상의 노인범죄 추세 및 노인수형자 특성

1. 전체 노인범죄

최근의 한국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범죄자가 1996년에는 2만7,720명이었던 것이 10년만인 2006년에는 무려 3.6배나 증가한 10만 1,199명으로 집계되었다. 61세 이상 범죄는 2005년에 7만4,770건으로 전체 범죄의 3.8%를 차지해서 1996년의 1.8%

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비중이다. 전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60세 이상 노인도 2005년 1,032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다.

〈표 2〉은 1996년부터 2006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범죄자 수와 61세 이상의 노인범죄자수를 대검찰청의 공식통계인 「범죄분석」과 통계청의 노인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이 통계에 의하면, 노인범죄자는 우리나라 전체 범죄자 대비 연평균 2.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범죄자수는 지난 10년(1996-2006) 동안 1996년 대비 연평균 13.6%가 증가한 반면에 61세 이상 노인범죄자는 연평균 68.4%가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범죄 증가율의 5배가 넘는 급격한 증가추세이며, 노인인구 증가율 32.6%와 비교해 봐도 2배 이상의 증가추세이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40대의 증가율 평균은 43.0%, 50대는 36.5%, 30대는 -3.8%, 20대는 8.8%, 10대는 20.4%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 평균이 68.4%에 이르는 노인범죄의 증가추세를 확연하게 볼 수 있다.

〈표 2〉 한국 전체 범죄자, 노인인구와 노인범죄자 (단위: 명)

연 도	전체범죄	노인인구	노인범죄 ⁴⁾
1996년	1,922,549	2,794,882	34,492
1997년	1,986,254	2,929,311	34,211
1998년	2,196,565	3,069,053	41,847
1999년	2,306,824	3,223,576	52,551
2000년	2,241,635	3,394,896	54,371
2001년	2,321,580	3,578,370	56,519
2002년	2,297,030	3,772,075	57,527
2003년	2,296,945	3,968,118	59,759
2004년	2,284,095	4,165,974	66,943
2005년	1,965,571	4,366,642	74,770
2006년	1,932,729	4,585,702	82,323
전체합계	23,751,777	39,848,599	615,313
전체범죄 대비 노인범죄	100.0%	-	2.6%
1996년 기준 증가율 평균 ⁵⁾	13.6%	32.6%	68.4%

4) 여기서 사용되는 노인범죄 통계는 「범죄분석」에 나오는 61세 이상인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범죄분석에서는 60세를 포함한 60세 이하는 다른 분류를 사용하여 60세 노인에 대한 통계가 현 상태에서는 빠져있으나 그 수치는 크지가 않아 전체의 추세를 분석하는 데는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2. 형법범상의 주요 노인범죄 발생 추세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노인범죄도 노인형법범과 노인특별법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노인형법범에는 사기를 비롯해 절도, 강간, 살인, 방화 등이 있다. 여기서는 노인형법범 중에서 일반범죄에서 분석의 기준으로 사용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나, 혹은 증가율이 다른 범죄보다 월등히 높은 8개의 노인범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3>는 형법범상의 노인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표 3> 주요 노인형법범 범죄

연 도	노인범죄								
	전 체	사 기	폭 행*	상 해	도박과 복표	절 도	강 간	살 인	방 화
1996년	34,492	5,751	3,183	1,284	534	318	94	20	7
1997년	34,211	5,231	3,324	1,300	541	383	115	23	11
1998년	41,847	6,452	4,156	1,702	667	478	105	31	19
1999년	52,551	8,119	6,285	2,325	1,025	772	156	22	17
2000년	54,371	6,894	7,571	2,547	1,407	866	129	32	24
2001년	56,519	7,152	7,843	2,826	1,382	865	134	62	24
2002년	57,527	6,791	7,259	2,659	1,380	1,125	230	43	30
2003년	59,759	7,130	8,186	2,988	1,394	1,116	292	46	39
2004년	66,943	9,591	8,049	2,941	1,635	1,349	254	50	33
2005년	74,770	9,988	8,876	3,107	1,580	1,534	290	77	38
2006년	82,323	11,090	6,504	5,079	1,149	1,929	423	59	46
전체합계	615,313	84,189	71,236	28,758	12,694	10,735	2,222	465	288
전체대비 평균비율	100.0%	13.7%	11.6%	4.7%	2.1%	1.7%	0.4%	0.07%	0.04%
1996년 기준 증가율 평균	68.4%	36.4%	113.8%	114.0%	132.8%	227.6%	126.4%	122.0%	301.4%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7-2007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포함.

5) 각 연도의 범죄발생을 직전 연도에 비교하는 비율 대신에, 1996년을 기준으로 하여 각 연도의 범죄 발생 증가율 및 평균을 계산하였다. 증가율을 직전 연도와 비교하였을 때, 장기적인 추세를 분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1999년의 전체범죄는 직전연도인 1998년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은 1999년보다 감소하여 전체범죄의 추세를 감소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인범죄자수가 공식통계에 나타난 1996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노인범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실제 통계는 1995년부터 시작하였음).

가. 사기

〈표 3〉에서 보듯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사기로 전체 노인범죄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우리나라 전체범죄 중에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노인사기범죄와 비슷한 13.6%였다.

노인 사기범죄의 추세는 2002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노인범죄 추세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7년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맞아 전체 노인범죄가 줄어들 때, 사기범죄도 함께 감소하였다. 노인범죄 중 사기범죄는 1996년 대비 증가율 평균은 36.4%로 노인범죄 전체 증가율인 68.4%의 절반 정도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사기범죄의 증가율 평균이 -6.6%에 비하면, 노인에 의한 사기범죄의 증가율 평균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노인 사기범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노인 사기범죄는 평균 21.2%로 지난 10년 동안(1996년-2006년)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범죄는 3대 노인범죄 중 여성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이다(〈표 4〉 참조).

〈표 4〉 주요 노인범죄의 여성비율⁶⁾

연 도	사 기			폭 행*			절 도		
	전 체	여성(%)		전 체	여성(%)		전 체	여성(%)	
1996년	5,751	1,309	(22.8%)	3,183	771	(24.2%)	318	82	(25.8%)
1997년	5,231	1,153	(22.0%)	3,324	718	(21.6%)	383	99	(25.8%)
1998년	6,452	1,348	(20.9%)	4,156	841	(20.2%)	478	103	(21.5%)
1999년	8,119	1,982	(24.4%)	6,285	1,360	(21.6%)	772	197	(25.5%)
2000년	6,894	1,613	(23.4%)	7,571	1,539	(20.3%)	866	210	(24.2%)
2001년	7,152	1,590	(22.2%)	7,843	1,494	(19.0%)	865	220	(25.4%)
2002년	6,791	1,483	(21.8%)	7,259	1,408	(19.4%)	1,125	301	(26.8%)
2003년	7,130	1,733	(24.3%)	8,186	1,580	(19.3%)	1,116	315	(28.2%)
2004년	9,591	2,312	(24.1%)	8,049	1,412	(17.5%)	1,349	327	(24.2%)
2005년	9,988	2,300	(23.0%)	8,876	1,501	(16.9%)	1,534	396	(25.8%)
2006년	11,090	2,410	(21.7%)	6,504	1,215	(18.7%)	1,929	510	(26.4%)
	평균	21.2%		평균	16.5%		평균	20.0%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7-2007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포함.

6) 이 표에서 세 가지 범죄만 제시한 이유는 그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한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노인의 사기범죄는 집단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최근 경찰에 붙잡힌 노인 사기단은 그 방식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게 했다. 68세부터 75세까지로 이뤄진 5명의 노인 사기단은 도박판을 벌인 후 장소를 빌려준 모텔 주인의 소위 쏭지돈(도박판에서 선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돈) 1억 원을 가로챘다. 도박이 한창일 때 돈이 든 가방과 가짜 가방을 바꿔치기 한 뒤 혈압으로 쓰러진 척하며 소란을 피운 뒤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모텔 주인을 따돌렸다. 이들은 이미 이런 수법으로 2건의 사기를 더 벌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나. 폭행과 상해

전체 노인범죄 중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폭행⁷⁾으로 지난 10년간 (1997-2006) 전체 노인범죄 중 평균 11.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범죄 중 폭행(폭처법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16.9%)에 비하면 다소 떨어지는 편이나 노인범죄 중에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노인의 폭행은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연평균 113.8% 증가하여 전체 노인범죄 증가율 68.4%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폭행은 1996년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6년 이후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 사기나 절도에 비해 범죄참여율이 낮은 범죄이다. 폭행범죄에 대한 여성 노인의 비율을 평균 16.5%이다(〈표 4〉 참조).

상해는 노인형법범 범죄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로 노인범죄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06년 사이 연평균 114.0%가 증가하였다.

다. 도박과 복표

형법 제246조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 의하지 않고 복권이나 상품권 등과 같은 복표를 발매하거나 중개한 자도 처벌한다.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는 노인형법범 범죄 중에서 네 번째(2.1%)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표 3〉 참조). 특히, 1996년부터 2006년 사이 증가율 평균이 132.8%에 이르고 있어 노인형법범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범죄이다.

7) 폭행은 형법범 중 폭행을 포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포함하고 있다.

라. 절 도

절도는 노인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1.7%)로 매우 낮은 편이나 지난 10년 동안의 증가속도는 연평균 227.6%로 매우 높은 편이다(〈표 3〉 참조). 이는 노인형범법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노인의 절도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199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절도의 여성비율은 20.0%로서 사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마. 강간, 살인, 방화

이들 범죄는 노인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으나(강간 0.4%, 살인 0.07%, 방화 0.04%), 증가율 평균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 참조). 방화는 증가율 평균이 301.4%로 노인형범법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방화는 2008년 초에 남대문 방화사건에서 보다시피 근래에 노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로 주목되고 있다.

강간과 살인도 발생건수는 아주 적으나,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여파와 증가속도를 고려해 볼 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간은 1996년 이후 평균 126%가 매년 증가하였고 살인은 122%가 증가하였다. 2007년 전남 보성에서 70대 어부가 관광한 여성을 강간·살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 2008년 3월 초, 부산 기장군에서는 74살 노인이 동창생을 잔인하게 살해해 암매장한 사건도 있었다.

3. 특별법범상의 주요 노인범죄의 발생추세

노인특별법범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노인범죄는 자동차 운전 또는 사고와 관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이다. 전자는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케 한 범죄로, 노인들이 자가운전이 늘어나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전체 노인범죄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증가율도 연평균 141.6%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표 5〉 참조).

〈표 5〉 노인특별법 범죄

(단위: 명)

연 도	노인특별법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⁸⁾
1996년	3,239	2,572
1997년	3,535	3,465
1998년	4,11	4,549
1999년	5,584	4,676
2000년	6,974	2,228
2001년	7,020	2,856
2002년	7,469	4,065
2003년	8,612	5,534
2004년	10,202	6,542
2005년	11,731	4,842
2006년	13,023	4,150
범죄별 합계	81,504	45,479
전체 노인범죄 대비 평균비율	13.2%	7.4%
1996년 기준 증가율 평균	141.6%	66.8%

노인특별법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범죄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다. 이 범죄의 증가율 평균(66.8%)은 전체 노인범죄 증가율 평균(68.4%)보다도 낮은 편이나 사기범죄(36.4%)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노인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고 노인들의 손수운전이 증가하는 추세와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하다.

4. 노인 수형자의 범죄실태: 신분장 분석

가. 노인수형자의 특성

조사대상 기관은 전국의 교도소, 지소, 구치소를 포함한 총 46곳이며, 대상 인원은 조사 시점에 60세 이상인 수형자인 총 1,214명이다. 이 중 범행 시 연령이 60세 이상인

8) 2000년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이 하나로 통폐처리되었으나 2000년부터는 도로교통법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등으로 나누어졌다. 2000년 이후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건은 소수여서 전체 도로교통법 위반의 추세분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집단은 737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60.7%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무부의 신분장에 의한 노인범죄자라 함은 범행 시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자를 칭하며, 수감시설에 따라 많게는 51명에서 적게는 1명이 수감되어 있다. 수형시설 중 30명 이상 수감되는 있는 시설은 7곳이고 10명 이하는 18곳이다.

우선 노인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남성이 훨씬 많은(92.8%)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65세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6-70세의 순인 것으로 나타나서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사람이 범죄를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은 초등학교졸업 이하의 비율이 42.7%, 중학교 졸업·중퇴가 21.4%로 나타나서 비교적 저학력 층의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수감 전 결혼상태는 기혼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61.4%). 직업은 무직의 비율이 29.7%였고, 생활수준은 하층의 비율이 55.5%로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노인범죄 실태 중에서 노인범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수형자는 살인범(23.5%)과 사기범(22.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절도(16.8%)와 강간(9.6%)의 비율이 높아서 살인과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전체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중범이 대폭 늘어났다.

노인수형자는 주로 단독범(78.0%)이었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 그들 간의 관계는 지인(60.6%)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범행 동기는 '부에 대한 욕심'이 24.1%로 1위로 올랐고 '원한이나 분노 때문에' 범죄를 행한 경우는 16.9%로 2위가 되었다.

노인범죄자에 의한 범행 시간대는 13시부터 18시까지인 주된 활동시간대가 가장 많고(35.8%), 범행 장소는 주로 집(26.1%)과 노상(19.3%)이었다. 노인수형자 중 84.2%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약물이나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며, 범행 시에 폭력과 흉기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64.8%였다.

노인 수형자의 전과 특성은 전과가 없는 초범의 비율이 45.9%인 반면에 전과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54.1%로 더 높게 나타나서, 향후 노인범죄에 대한 연구에서 범죄경력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초범 시기를 살펴본 결과, 60대에 처음 범죄를 저지는 비율이 40.2%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이 초범연령이었다는 응답도 6.1%여서, 전체 노인수형자 10명 중 4.5명은 노인이 되어 처음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노인수형자가 저지른 범죄에서 피해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52.7%로 여성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50대(25.6%)-40대(21.6%)-60대(20.6%)의 순이었다.

노인범죄의 주된 피해자는 자영업자(40.5%)였고, 피해자의 75%는 단독피해자였다. 피해자는 지인이 32.9%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가족/친척(32.1%)과 사업이나 직장 관계인(9.2%)의 순서이다.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가장 많은 22.5%이고 다음은 백만 원 이하(20.6%)와 5억 원 이상(18.4%)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 10명 중 8명 가량은 가해 당사자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노인수형자의 특성 요약

1995년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의 사회참여나 활동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범죄자는 하층계층이 감소한 반면에 중간층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직업도 무직이나 단순생산직보다는 전문직이나 관리직이 증가하였고 학별도 향상되었다.

가족형태의 변화로 이혼한 경우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가 급증하였고, 노인 범죄의 공범도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보다는 사업이나 직장 관련 사람들이 많았다. 노인범죄의 동기로는 과거에는 원한관계가 가장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욕이나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았다.

노인의 육체적 능력의 향상으로 새벽시간대의 범죄 발생도 많아졌으며, 젊은이들만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흥기의 사용 비율도 증가하였다. 범죄의 종류를 보더라도 살인과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 중 흉악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Ⅵ. 노인 범죄피해 실태 및 피해자 특성

1. 공식통계로 살펴본 노인의 범죄피해 추세

가. 범죄피해 경험

노인 범죄피해자는 1996년의 33,431명에서 2006년에 87,53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4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범죄피해자 연평균 증가율(4.7%)보다 10배가 넘는 수치이다. 2008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지난 1년간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네 가지의 범죄피해(절도, 사기, 강도, 폭행)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네 가지 범죄피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겪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2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9.2%에 해당하고, 범죄피해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가 911명(90.8%) 이었다. 여기서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의 수는 아래에서 살펴 볼 범죄유형별 피해 실태에서의 피해자 수를 합한 것(128명)보다는 적은 수인데, 이는 이 기간에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체 응답 노인들 중 최대 36명(3.6%)은 지난 1년간 두 가지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한 셈이다.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보면, 절도피해자가 57명으로 가장 많고, 사기 피해 45명, 강도피해 15명, 폭행피해 11명의 순서이다.

범죄피해 노인의 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 범죄피해자 중에서 여성은 32.6%를 차지한다.

형법범 범죄피해 노인은 우리나라 전체 형법범죄 피해자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형법범 피해노인의 31.5%는 사기피해를 입었고, 폭행피해가 21.4%로 두 번째 순서이다. 노인의 특별법 범죄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위반 피해와 도로교통법위반 피해이다.

지난 10년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상의 범죄와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는 2005년에 1996년 대비 건수에서 약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구성비도 15%p 증가하였다. 동기간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도 3배 이상의 증가추세이다.

나. 신고 여부

네 가지 범죄피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총 44명으로 전체 피해 경험자 128명중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65.6%(84명)였다. 1995년의 조사에서 범죄피해를 당하고 나서 신고했다는 비율이 30.3%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신고비율이 약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범죄피해 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노인들의 경찰의 조치에 대한 만족 여부를 살펴보면 ‘만족하였다’가 45.5%이고 ‘만족하지 못하였다’가 5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았으며, ‘범인이 아는 사람이라서’가 13.1%, ‘경찰이 돕지 못할 것 같아서’가 20.2%, ‘보복이 두려워서’가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실태⁹⁾

가. 절도 피해 실태

1) 절도 피해 경험 유무

조사시점 이전 1년 동안에 절도(‘나도 모르게 집에 도둑이 들거나, 소매치기 등을 당해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린 것’)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총 57명의 응답자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전체 응답자의 5.7%에 해당한다.

2) 절도 피해 장소

절도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 장소를 알아 본 결과 <표 5-14>에서와 같이 집안이 41.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중교통수단 안에

9) 개별 범죄 유형별 빈도분포에 따른 퍼센트 산정에서 빈도가 적은 경우에 퍼센트 산정은 그 의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서가 17.0%, 집 근처가 15.1%, 시장(백화점, 상가 등) 및 길거리가 각각 9.4%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절도 피해 시간

절도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시간을 알아 본 결과 낮12시~오후6시 사이가 4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오후6시~밤12시 사이가 23.5%, 밤12시~새벽6시 사이가 19.6%, 오전6시~낮12시 사이가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절도피해의 발생장소로 ‘집안’이 22명(41.5%)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한 밤중이 아닌 시간대에 집에 침입한 도둑의 피해를 입은 비율이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절도 피해액

절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액을 알아 본 결과, 10만원 미만이 3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27.5%인 것으로 나타나서 절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절도 피해 경험과 배경변인과의 관계

지난 1년간 절도피해를 당한 57명의 응답노인들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일상생활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도(都)·농(農), 성, 연령대, 최종학력, 생활비 충당 경로, 직업 유무, 결혼상태, 현재 사는 곳, 개인의 월평균 수입, 외출 빈도 등의 변수에 대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각 변수(variable)의 변수값(value)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절도피해 경험은 배경변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나. 사기 피해 실태

1) 사기 피해 경험 유무

조사시점 이전 1년 동안에 사기(‘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린 것’)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총 45명의 응답자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전체 응답자의 4.5%에 해당한다.

2) 사기 가해자의 연령

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해자의 연령을 알아 본 결과 50대~60대인 경우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0대~40대로 37.2%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노인들은 주로 중장년 연령층의 사람으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기 가해자와의 관계

사기피해를 입은 노인들과 그 가해자와의 관계는 친구·선후배·직장동료인 경우가 3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3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만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비율은 19.1%이다. 따라서 안면만 있는 사람에게 사기피해를 당한 비율은 상당히 줄어든 대신에 친구·선후배·직장동료 등 잘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비율은 증가한 경향을 볼 수 있다.

4) 사기 피해액

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은 노인들의 피해액을 살펴보면, 절도 피해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10만원 미만이 20.0%(8명)이지만, 100만원 이상의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도 22명(피해자의 55.0%)이며 이중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노인도 12명(30.0%)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사기 피해의 종류

사기 피해자의 약 반수(45.9%)는 개인간 돈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품 구입 등과 관련하여 사기 피해를 입는 비율이 27.0%에 이르며 사업 및 투자관련 피해 비율도 2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사기 피해 경험과 배경변인과의 관계

지난 1년간 사기피해를 당한 45명의 응답노인들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일상생활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도·농, 성, 연령대, 최종학력, 생활비 충당 경로, 직업 유무, 결혼상태, 현재 사는 곳, 개인의 월평균 수입, 외출 빈도 등의 변수에 대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각 변수(variable)의 변수값(value)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연령대와 교육수준의 두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말해,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기피해를 당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60대의 노인들이 70대 이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많고 활동성이 높는데 기인한 결과로 파악된다. 또한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기피해를 당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지하고 사회생활에 밝지 않아서 사기를 더 많이 당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에 비하면 반대의 결과이다. 아마도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일수록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고 활동성이 높는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다. 강도 피해 실태

1) 피해 경험 유무

조사시점 이전 1년 동안에 강도(‘다른 사람이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것’)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총 15명의 응답자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전체 응답자의 1.5%에 해당한다.

2) 강도 피해 장소

강도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 장소를 알아 본 결과, 4명(33.3%)이 집안에 침입한 강도의 피해를 입었고, 또 다른 4명은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강도 가해자의 수

노인이 강도 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해자의 수를 알아 본 결과, 단독 강도였던 경우가 58.3%이고, 2명으로부터 강도를 당한 노인 피해자가 2명이며, 강도의 수가 3명이나 그 이상이었던 경우는 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강도 피해액

노인 피해자가 강도로 인해 입은 피해액을 알아보면, 10만원 미만이 7명(50.0%)이며,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2명(14.3%)으로 나타났다. 강도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절도 범죄에 의한 피해 규모와 비슷한 액수임을 알 수 있다.

라. 폭행 피해 실태

1) 피해 경험 유무

조사시점 이전 1년 동안에 폭행(‘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거나 밀쳐서 다치게 한 것’)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총 11의 응답자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전체 응답자의 1.1%에 해당한다.

2) 폭행 피해 장소 및 피해 시간

노인이 폭행피해를 당한 경우에 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알아본 결과, 집안과 길거리가 각각 3명(27.3%), 집근처 2명(18.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폭행을 당한 시간은 저녁 6시~밤 12시 사이가 4명(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오후 시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폭행 피해 당시 피해자의 태도

폭행피해를 당할 당시에 피해자의 태도를 알아 본 결과, 순순히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대항하여 싸웠다는 응답자도 3명(27.3%)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도 범죄의 피해를 입을 당시에 피해자의 태도와는 약간 상이한 것으로서, 노인들은 폭행을 당하는 경우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폭행 가해자의 연령

노인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의 연령은 30~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1995년 조사의 경우에 노인들의 폭행피해 가해자 역시 60대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과 상당히 다른 결과인데, 비록 빈도수가 적어서 일반화에 무리가 있지만, 전반적인 노인경시 풍조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가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해자와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 9명(81.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그 비율이 매우 증가한 것(33.3%에서 81.8%로 증가)인데, 위의 가해자 연령과 연관지어 볼 때 이 역시 노인경시 풍조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다.

6) 폭행 피해 경험과 배경변인과의 관계

지난 1년간 절도피해를 당한 11명의 응답노인들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일상생활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도·농, 성, 연령대, 최종학력, 생활비 충당 경로, 직업 유무, 결혼상태, 현재 사는 곳, 개인의 월평균 수입, 외출 빈도 등의 변수에 대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각 변수(variable)의 변수값(value)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⁰⁾

10) 폭행피해 유경험자가 11명에 불과하고, 셀 빈도수가 적은 것도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노인의 폭행피해 경험은 배경변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마. 노인의 유기 및 학대피해 실태

절도, 사기, 강도, 폭행의 4가지 범죄피해 외에, 노인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피해 유형인 유기 및 학대피해 실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기 및 학대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11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여 피해 경험을 확인한 결과, 가장 보편적인 노인학대는 주로 정서적 학대이며 그 다음이 언어적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 두어진 적이 있다’는 유기 경험 비율도 3.5%로 나타났다. 학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도 3.1%~2.7%에 해당한다.

유기 및 학대의 피해경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그 피해를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1.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전반적인 사회풍토 때문(34.6%)’과 ‘상대방이 문제가 있기 때문(24.2%)’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대응 역시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냥 참았다(52.9%)’와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였다(12.4%)’의 비율이 65.3%에 이르러 매우 높은 반면에,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비율은 15.4%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과 일상생활 활동 특성 변인을 모두 포함한 다변량회귀분석 결과,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상호 통제된 상태에서, 노인의 학대피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정도($p < .001$), 월평균 개인수입($p < .05$)과 외출 빈도($p <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학대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월평균 개인수입이 낮고 외출 빈도가 적을수록 학대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바. 노인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심층적인 소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서 노인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유해성 인식을 공간별 및 유형별로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들이 유해하게 인식하는 공간은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아침시간대의 공원, 혼잡한 출근시간대의 지하철(전철) 내부, 매매춘 유혹이 있는 종묘와 탑골공원 앞 거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횡단보도 등이었다.

한편 노인들은 물건 구입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할 위험성, 피싱(phishing) 등 전화관련 사기 유해성, 노인취업 관련 사기 가능성, 노인활동 공간에서 패싸움 등에 연루될 가능성과 길거리에서 돈을 갈취당할 가능성 등을 노인생활 활동 관련 유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II. 결 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노인범죄 및 노인의 범죄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유형과 관련하여, 노인의 재산범죄에 관한 대처방안이다. 사기나 절도의 경우는 1995년도 연구와 비교했을 때, 2.6배와 6.7배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식통계상으로도, 지난 10여 년 동안의 형법범 상의 사기범죄는 전체 노인범죄의 1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절도의 증가율은 매년 2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수형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봐도 금전(돈)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1995년도의 연구와 비교하여 노인수형자들의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하층 계급에 속하는 노인수형자는 다소 감소한 반면에 중간층 노인범죄는 10%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부주의나 심심풀이, 의리나 동정심 때문에,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범죄(15.4%)는 줄어든 반면에, 생활비 마련(20.3%→24.1%)이나 부에 대한 욕심(4.5%→14.6%) 등이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범죄의 증가추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취업을 증가시키고 노인관련 복지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에서는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에 노인인력운영센터(현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70여 개를 운영하여 노인들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다(모선희 외, 2006). 이 외에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어 노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노인들은 이와 같은 제도로부터 혜택을 못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강력범죄에 관한 대처방안이다. 강력범죄 중 방화는 지난 10여 년 동안 매년 평균 300%가 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강간과 살인은 12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의 “비노인화”하는 현상과 더불어 노인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규정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노인은 자신과 가족 및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못 찾는 데에 대한 반대급부적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인이 은퇴 후에도 계속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노인교실이나 노인복지회관의 보급 확대, 또는 대학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심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의 계층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범죄와 범죄피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기범죄와 이와 관련한 범죄피해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인범죄는 1996년대비 매년 36% 이상 증가하여 왔고 사기범죄피해는 평균 두 배 이상 증가해 왔다. 사기범죄피해의 유형을 보면,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효도관광 판매사기, 건강식품이나 보조의료기구 판매사기 등이 있으며, 노인들이 집안에 주로 거주하는 특성을 이용한 전화판매사기나,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사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노인들의 판매사기의 방지를 위해 정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의 통과를 노력 중이다. 현재는 노인 소비피해자들은 경찰서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 신고하는 노인은 드물고 이런 신고처에 대한 인지도 매우 낮은 편이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허위광고 및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3개월 이상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법」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목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노인을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노인피

해자들을 구제할 수가 없다.

미국의 경우는 「Senior Citizens Against Marketing Scams Act」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행위에 대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노인 소비자를 명시적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실에서 발생하는 노인 대상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상거래법」, 「소비자계약법」등을 통해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인범죄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 다행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대책에 의하면, 1) 노인들의 피해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고, 2)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3)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 강박 등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자에 대해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노인의 범죄피해 관련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있거나 직업이 있거나 대인접촉이 활발한 노인일수록 범죄피해 경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노인의 경제·사회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볼 때, 또 피해이론에 의해서 볼 때에도 노인의 일상생활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범죄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유기 및 학대와 관련해서는 1995년 조사에 비해서는 노인들의 의식이 많이 전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들 스스로가 유기, 학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학대 예방 교육과 상담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판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노인학대예방법이 발효 중이지만,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신고의무자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고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성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더불어 피해자를 위한 쉼터 등 노인시설의 활성화도 요구되며,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지역내 의료기관, 사법 및 경찰조직,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경찰청. 1995-2007. 「경찰백서」.
- 고보선. 2005. “노인학대 위험요인이 학대 심각성 인지 및 학대 경험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9(가을호): 91-121.
- 고양곤. 1998.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의 역할”, 『평생학습사회와 노인교육』. 교육부.
- 구자숙 · 이현희 · 원영희 · 전영실. 2003. “노인의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한국형사정책연구」 14권3호:141-17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구자숙 · 이현희 · 원영희. 2003. “노인범죄 추이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2): 125-139
- 구현아. 2007.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 권중돈. 2004.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1-19.
- 김승용. 2000. “노인범죄의 실태분석과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일 연구”, 「노인복지연구」 2000(가을호): 125-153.
- 김인숙. 1998.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 국민대 「사회과학연구」 11: 345-359.
- 김종오. 1997. “한국의 노인범죄 실태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 김창기 · 박일연. 2003. “노인의 의존성 및 부양자 행동통제 기술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여름호): 7-28.
- 김태현. 2007. 『노인학』. 교문사.
- 김태현 · 한은주. 1997. “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을 위한 문헌적 고찰”, 「한국노년학」. 72(1): 51-73.
- 김한곤. 2003. “미국 거주 한인 노인들의 노인 학대 실태”, 「한국인구학」 23(4): 67-83.
- 김현욱. 2002. “노인범죄의 특성과 실태에 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2:123-142.
- 대검찰청. 1996-2007. 「범죄분석」.
- 모선희 · 김형수 · 유성호 · 윤경아. 2006. 『현대 노인복지론』. 학지사.
- 미야자와 고이치. 1999. 『피해자학 입문』. 장규원 역, 길안사.
- 박숙자. 1999. “노인의 소득활동”,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노인과 한국사회』, 사회문화

연구소.

법무연수원. 1996-2007. 「범죄백서」.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7년 전국 노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보건복지가족부.

서윤. 2000.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격실태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 28-71.

오흥수. 2002. “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고찰”, 「노인복지연구」2002(봄호): 217-234.

유흥준 · 정태인 · 이완수. 2003.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의식 조사」. 자녀안심운동 서울 협의회.

이성희 · 한은주. 1998.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요인”, 「한국노년학」 18(3): 123-142.

이연호. 2002. “선진국 노인학대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14: 165-192.

_____. 2005.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피해』. 한국학술정보.

이영남. 1998. “일본의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관동대 논문집 「사회과학논총」 3(1): 143-155.

_____. 2001. “한국의 노인범죄 대책에 관한 연구”, 관동대 논문집 「사회과학논총」 6: 531-547.

이원숙. 2004. 『가족복지론』. 학지사.

이종원. 2004.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실증적 연구」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해영. 1996. “새로운 복지문제로서의 노인학대에 관한 고찰”,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학술 계간지, 통권3호. 301-328쪽.

이현희 · 원영희 · 구자숙. 2003. “노인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2): 125-139.

자녀안심운동서울협의회. 2000. 「학교환경의 유해성 인식 조사」.

장인협 · 최성재. 1997. 『노인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태인 · 고성호 · 이정환 · 유흥준 · 문용갑 · 이성용 · 장준오 · 이완수. 2008. 『사회문제』. 그린 조애저 · 김승권 · 김유경. 1999. 「노부모 학대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광준. 2002. “노인범죄의 특성과 그 대책”, 「한국노년학」 21(3): 1-14.

최선화 외. 1998.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4(4):

189-214.

최신덕 역. 1985. 『노년사회학』, 경문사.

통계청.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경희 외). 1998.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건중·전영실). 1995.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동효. 2008. “고령화사회의 노인범죄 유형별 추이와 범죄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

한동희. 1996.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 박사학위논문.

2000.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에 관한 연구”. 노인생활과학연구소.

한은주. 2000.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허경미. 2004.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423-452.

———. 2006. “도시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4(2): 271-300.

[국외문헌]

Akers, R. L., J. La Greca and C. Sellers. 1988. *Theoretical Perspectives on Deviant Behavior among the Elderly*. In McCarthy B. & R. Langworthy (Eds.), *Older Offenders: Perspective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New York: Praeger.

Amir, Menachim. 1971. *Patterns of Forcible Ra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lston, L. 1986. *Crime and Older Americans*. Illinois,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lishers.

Black, Donald.. 1983. “Crime as Social Contro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3: 1087-1111.

Brogden M. and P. Nijhar. 2000. *Crime, Abuse and the Elderly*. Portland: Willan Publishing.

Cohen L. E. and M.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Feinberg, C. 1984. *Profile of the Elderly Shoplifter*. In Newman E., D. Newman and

- M. Grewitz (Eds). *Elderly Criminals*. New York: Oelgeschlager Press.
- Greenberg, J.R., M. McKibben and J.A. Raymond. 1990. "Dependent Adult Children and Elder Abuse".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2(1/2): 73-86.
- Hindelang, M. S., M. Gottfredson and J. Garofalo.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Cambridge.
- Hirschi, Travis.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nson, P. and L. K. Ryder. 1983. "Crime and Elderly: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and Fear". *The Gerontologist*. 23(2): 207-212.
- Kennedy, Leslie W. and Vincent F. Sacco. 1998. *Crime Victims in Context*. LA: Roxbury Publishing Company.
- Kosberg, Jordan I. 1988. "Preventing Elder Abuse". *The Gerontologist*. 28(1): 43-50.
- Luckenbill, David.. 1977. "Criminal Homicide as a Situated Transaction," *Social Problems* 25:2:176-186.
- Miethe, T. D. and R. F. Meier. 1990. "Opportunity, Choice, and Criminal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1); 243-266.
- Pillemer, K. and D Finkelhor. 1988.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The Gerontologist*. 28(1): 51-57.
- Quadagno J. 2008. *Aging and the Life Course*(4th ed.). Boston: McGraw Hill.
- Quinn, M.J. and S. K. Tomita. 1997. *Elder Abuse and Neglect*.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Sharpe, Charles C. 2003. *Frauds Against the Elderly*. Jefferson, North Carolina: McFarland & Company
- Wolf, R. 1996(2000). "The Nature and Scope of Elder Abuse". *Generations* (Summer). 24(2): 6-12.

Elderly Crime and its Victimization

Jang, Joon-Oh^{*}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a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crime rate committed by the aged in Korea; to analyse a trend and victimized experience and fear of crime of the aged; and to examine harmful environment for the aged in everyday life.

Based upon the findings, this study seeks to applicable criminal justice responses to elderly crimes and victimization of elderly crim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wellbeing for the aged in Korea.

This study had employed three research methods. First, from 1997 to 2006 the personal records of all inmates with age 60 or over in correctional facilities were analyzed trends, and patterns, and more specific information on elderly crime. The sample size was 737 inmates.

Second, the study pictured the general trend of elderly crime in Korea based on official statistics of crime. In order to grip more detailed and actual information about the experience and awareness of crime of the aged, nationwide survey was conducted. The sample was about 1,000 cases. To conduct survey, region (city/rural) and gender were preselected by national population criteria and then, 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was utilized for the regional samples.

Last, it figured out the awareness of safety and/or harmfulness of everyday environment. Two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arried out.

❖ Keywords : Elderly crime, Elderly crime victimization, elderly inmate

투고일 : 2009. 1. 30 / 심사(수정)일 : 2009. 2. 20 / 게재확정일 : 2009. 2. 26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h.D. in Sociology